

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7~15
----------	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 이유

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서 금연구역의 표시와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로 중복 기재한 내용을 삭제하고, 조례로 위임받지 않은 내용을 규칙으로 재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그 위법성을 바로잡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금연구역 표시 규정 삭제함(안 제6조)

- 금연구역의 표시 기준이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령(별표 2)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위임한 바 없으므로 삭제
- 조례로 위임받지 않은 사항을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규정 삭제

나. 흡연구역 등의 설치규정 삭제함(안 제7조)

-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(별표 2)에 규정되어 있고 조례로 위임한 바 없으며, 소유자 등에게 흡연실 설치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위임 없이 조례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함.(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위반)
- 위임받지 않은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 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문제 해소(흡연구역 ⇒ 흡연실) 위해 삭제
- 위임받지 않은 내용을 규칙으로 재위임하는 법령위반 규정 삭제

다. 과태료 규정 정비함(안 제10조)

-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위반 소지를 없앴
 - 근거: 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 제33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라목2)
 - 위임내용: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만
10만원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4항·제6항, 제34조제3항
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, 별표 5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'17. 1. 24.~2. 13.

(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: 반영함(안 제8조제1항·제2항)

(6) 전국 개정현황

○ 완료(11): 인천중구, 광주북구, 울산동구, 평택, 양평, 정읍,
화순, 나주, 청송, 구미, 영덕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”를 “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”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있고”를 “있고, 금연교육 시 성별·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. 또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.”를 “홍보물 제공 및 여성 전용 상담실·상담원 운영, 청소년·여성 대상 찾아가는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과태료)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거창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</p> <p>제6조(금연구역 표시)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, 크기와 설치방법,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</p> <p><삭 제></p>
<p>제7조(흡연구역 등의 설치) 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소유자 등”이라 한다)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1. 흡연 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.</p> <p>2.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시설을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, 크기와 설치방법, 경계의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<삭 제></p>

